

공유재산 관리계획(취득)승인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1. 12. 5

나. 회부일자 : 2001. 12. 24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
제 5차 사회도시위원회 (2001. 12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고 광 태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이 근 수)
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
-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~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-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 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공유재산 취득안에 따른 승인 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1. 12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□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□ 취득승인 요청

-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서,
-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~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00,000천원이 되겠습니다.

□ 취득방법

-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.

□ 참고사항

-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

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

명 칭	소 재 지	면 적	소요재산	취득시기	비 고
공영 노외주차장	서구 관내	100평 이상	500,000천원	2002년중	

※매입 당시 여건(매입금액, 면적 등)을 고려하여 개소 수(1~3개소)를 결정하겠습니다.